

가 안 용 지 농 고 재 사 호

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2px;"> 농 고 재 사 호 </div>	신청 번호 1438.5	(전화번호 430...)	전결규장 조 항 전결사항	제 1 부시장	
보존년한	<div style="font-size: 2em; font-weight: bold;"> (농고재사호) </div>				
보 조 기 관	보전사회국장 보전행정국장 보전행정계장	예산과장 예산계장 시민의장 조문서관리계장			회계과장 회계심사계장
기안책임자	박종심	73.7.			
경 수 참	유 신 조	발 신	각 안 참조		
계 목	무 연 분 보 개 장				
제 1 안 비 부 결 재					
1. 방침에 따라 개참고지 지난					
6. 13 ~ 7. 13 까지 1개월간 연고자 또는 관리자					
로 하여금 신고토록 한바 있는 취제리묘지 비무연고					
분묘에 대하여					
2. 신중을 기하기 위하여 별안과 같이					
1개월간 재차 응고하여 연고자 또는 관리자가					



0201-1-8A

190mm×268mm 배상치 407/m²

1969. 11. 10. 승인

3272

아래

있을 때에 신고제 하고자 합니다 각안 시행코자 합니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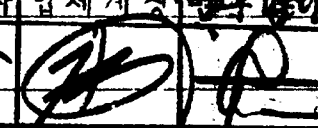
가. 응고안 (제 2안과 같음)

나. 응고료지출안 (제 3안과 같음)

다. 각구지시안 (제 4안과 같음)

제 2안 : 응고안

서울특별시응고제 호

응고안심자	1973.7.21	제 150 호
심자자	법제계장	법무부장관
홍 		

무연분묘개장공고

도시계획 사업을 위하여 이미 무연분묘로 복제리 묘지에 매장된 분묘를 정리 하오니 영고자 또는 관리인은 신고 할것을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 16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 조의 규정 에 의하여 이를 응고 합니다

1. 분묘소재지 경기도 고양군 복제면 복제리 산 4-1, 산 5, 산 6 일부

2. 신고기간 73. 7. 26 ~ 8. 25 (1개월간)

3. 신고장소 복제리 묘지 사무소

4. 기타 상세한 것은 당시 보건사회국 보건행정과 (172-4441) 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기간내에 신고치 않은 분묘는 당시에 서 개장후 합동분묘를 조성 합니다

73. 7. 26

결재부 인자기업

서울특별시장 양택식

제 3 안 공고료지출안

1. 공고료: -금 九萬원 $\text{₩} 90,000$
2. 지출방법: 청구에 의하여 지불함
3. 지출의무: 보진비, 보진키생관리, 보서관리

수수료

× 4 의

적요	행수	단가	금액	부기
2개사	2단 30행	400	48,000	$2 \times 30 \times 400 \times 2 \text{개사} = 48,000$
2개사	"	350	42,000	$2 \times 30 \times 350 \times 2 \text{개사} = 42,000$
계			90,000	

제 4 안

수신 수신처참조

제 목 등 진

별첨과 같이 복제리보지배 무안고분묘를
이장고지 공고되었으니 기관내 연고자 등이 있으면 신고
토록 조치 할 것.

첨부: 공고문 1부

수신처

서칭 (~)

시출 (~)

벽제리보지사무소 봉미리보지사무소

비곡리보지사무소 망우리보지사무소

출